



定 款



정 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상 호) 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보락 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bolak company limited라 한다.

제 2 조(목 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식품첨가물제조 및 판매업
2. 의약품제조업
3. 식품제조, 가공 및 판매업
4. 화공약품제조 및 판매업(독극물, 방화약품, 화약류 제외)
5. 박하와 기타 특용 및 식용작물의 재배, 가공 및 판매
6. 수출입업
7. 유익사업의 투자 및 주식의 소유
8. 부동산 임대업
9. 식품조리 및 판매업
10. 사료, 비료 제조 및 판매업
11. 시약 및 생화학적시약 제조 판매업
12.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
13. 의약품 도,소매업
14. 의약품 수출입업
15.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
16.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
17. 치약,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 및 판매업
18. 동산 임대업
19. 위 각호의 제품에 대한 각종 원료, 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
20. 전자상거래업
21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사업

제 3 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정 등의 설치)

- (1)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내에 둔다.
- (2)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정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(공고방법)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bolak.co.kr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며, 전기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(발행할 주식의 총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오백만주로 한다.

제 6 조(일주의 금액)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이백원으로 한다.

제 7 조(주식의 종류)
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.

제 7 조의 2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

- (1)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할 주식의 수는 3,000만주로 한다.
- (2)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%이상 12%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.
- (3)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- (4)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- (5)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- (6)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- (7)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8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9 조(주식의 발행 및 배정)

- (1)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
 -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
- (2)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
-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 -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(3)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
- (4)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(5)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.
- (6)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(7)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제 9 조의 2(주식매수선택권)

- (1) 이 회사는 임·직원(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·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
- (2)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·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
- (3)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(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·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·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(5)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.
- 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-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(6)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.
- (7)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(8)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(9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·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②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받은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9 조의 3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(명의개서대리인)

- (1) 이 회사는 증권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.
- (2)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
- (3)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- (4) 제(3)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 11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- (1)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.
- (2)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.
- (3)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.

제 3 장 사 채

제 12 조(사채의 발행)

- (1)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(2)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2 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

- (1)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(2)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 -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 -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
-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(3) 제(1)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(4)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2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.
- (5)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(6)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3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

- (1)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1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(2)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 -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 -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(3)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(4)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2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
(5)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(6)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3 조의 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14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 4 장 주 주 총 회

제 15 조(소집시기)

(1)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
(2)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16 조(소집권자)

(1)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
(2)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7 조(소집통지 및 공고)

(1)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
(2)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18 조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.

제 19 조(의 장)

(1)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.

(2)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0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

(1)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·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(2)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1 조(주주의 의결권) 주주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.

제 22 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- (1)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(2)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3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(1)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(2) 제(1)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4 조(주주총회 결의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0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 25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 5 장 이사, 이사회, 감사

제 26 조(이사 및 감사의 수)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, 감사는 1명이상으로 하고 사외 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0이상으로 한다.

제 27 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

- (1)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을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- (2)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0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,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(3)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(이사 및 감사의 임기)

- (1)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- (2)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.

제 29 조(이사 및 감사의 보선)

- (1)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, 이 정관 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(2) 사외이사가 사임·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30 조(대표이사등의 선임)

- (1) 이 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대표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하며 회장, 부회장, 사장 및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 31 조(이사의 직무)

- (1)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(2)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1조의 2(이사의 보고의무)

- (1)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2)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2 조(이사,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)

- (1)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- (2)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3 조(감사의 직무)

- (1)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(2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(3)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(4)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(5)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(6)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(7)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제 34 조(감사의 감사록)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 35 조(이사회회 구성과 소집)

- (1) 이사회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(2) 이사회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(3) 이사회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(4)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회회에서 정한다. 다만,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.

제 36 조(이사회회의 결의방법)

- (1)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(2) 이사회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(3)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37 조(이사회회의 의사록)

- (1) 이사회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(2)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38 조(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 이사 및 감사의 보수,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.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단,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을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
제 39 조(상담역 및 고문) 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관명을 둘 수 있다.

제 6 장 계 산

제 40 조(사업년도)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1 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)

- (1)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대차대조표
- ② 손익계산서

-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- (2) 이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- (3)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(4)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 - ①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
 - ②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
- (5)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6) 대표이사는 제(1)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회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(7) 대표이사는 제(1)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(4)항에 의한 이사회 의결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1 조의 2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2 조(이익금의 처분)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(이월이익잉여금 포함)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1. 이익준비금(상법상의 이익준비금)
- 2. 기타의 법정적립금
- 3. 배당금
- 4. 임의적립금
- 5.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
- 6. 차기이월 이익잉여금

제 43 조(이익배당)

- (1)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- (2) 제(1)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제 43 조의 2(중간배당)

- (1)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
- (2) 제(1)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의결로 하되, 그 결의는 제(1)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

(3)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
-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
-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- ③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
- ④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- ⑤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
- ⑥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
(4)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(1)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44 조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(1)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(2) 제(1)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
부 칙

- 이 정관은 199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
- 이 정관은 1994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96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단 일부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98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단 제29조 제3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2000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2001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2002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2008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0년 3월 19일부터
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개정 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16일부터
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 제3항, 제14조, 제34조, 제37조, 제41조,
제42조의2, 제43조, 제43조의2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
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정관은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2일부터
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의2 및 제14조의
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
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